

군포도시공사 제7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 사장 원 명 희

2020년 7월 10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55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[별표 2]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2]

직급별 채용 자격기준

1. 일반직

직급별	자 격 기 준
2급	1.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2.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임원 직하위 부서장으로 4년 이상 경력자 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3급	1.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2.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6급 상당 직급으로 3년 6개월 이상 경력자 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 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4급	1. 공무원 7급 이상 경력자 2.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7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 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 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5급	1.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2.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8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 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 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6급	1.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.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9급 상당 직급으로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 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 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7급	자격제한 없음 (단, 채용직무 특성에 따라 자격증 및 일반직 6급 자격기준 미만의 직무경력 제시 가능)

※ 지역제한: 경기도로 제한(단, 필요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지자체장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)

※ 변호사, 회계사 등 전문직 채용을 위해 해당자격을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.

2. 기능직

직급별	자 격 기 준
1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2.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8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 3.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 4.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2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.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9급 상당 직급으로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 3.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 4.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3급	<p>자격제한 없음 (단, 채용직무 특성에 따라 자격증 및 기능직 2급 자격기준 미만의 직무경력 제시 가능)</p>

※ 지역제한: 경기도로 제한(단, 필요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지자체장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)

※ 법령에 의한 선임 등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부
입 안 자	직 위	경영기획부장
	성 명	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이 태 권 (390-7615)

현행

[별표 2]

직급별 채용 자격기준

1. 일반직

직급별	자 격 기 준	
2급	1. 공무원 4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5급 경력 3년 이상인 자 2.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자 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부서장으로 5년 이상 경력자 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	
3급	1. 공무원 5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6급 경력 4년 이상인 자 2.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4년 이상 경력자 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부서장으로 3년 이상 경력자 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	
4급	1. 공무원 6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7급 경력 3년6개월 이상인 자 2.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3년6개월 이상 경력자 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	
5급	1. 공무원 7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8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.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2년 이상 경력자 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4년 이상 경력자 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
6급	1. 공무원 8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.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2년 이상 경력자 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 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
7급	신규 채용	1. 자격제한 없음(필기시험)
	경력 경쟁 채용	1. 공무원 9급이상 경력 1년6개월 이상인 자 2.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1년6개월 이상 경력자 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1년 이상 경력자 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※ 지역제한 : 경기도로 제한

※ 노무사, 세무사 등 전문직 채용을 위해 해당자격을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.

2. 기능직

직급별		자 격 기 준
1	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무원 7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8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(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 2.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2년 이상 경력자(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 3.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
2	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무원 8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(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 2.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2년 이상 경력자(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 3.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3	신규 채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채용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(필기시험)
	경력 경쟁 채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무원 9급이상 경력 1년6개월 이상인 자 (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 2.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(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 3. 채용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. 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 대형면허자격증 소지자로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(운전직 채용시) 5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※ 지역제한 : 경기도로 제한

※ 법령에 의한 선임 등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다.

개정안

[별표 2]

직급별 채용 자격기준

1. 일반직

직급별	자 격 기 준
2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2.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임원 직하위 부서장으로 4년 이상 경력자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7년 이상 경력자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3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2.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6급 상당 직급으로 3년 6개월 이상 경력자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4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공무원 7급 이상 경력자2.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7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5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2.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8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6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2.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9급 상당 직급으로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7급	자격제한 없음 (단 채용직무 특성에 따라 자격증 및 일반직 6급 자격기준 미만의 직무경력 제시 가능)

※ 지역제한: 경기도로 제한(단, 필요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지자체장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)

※ 변호사, 회계사 등 전문직 채용을 위해 해당자격을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.

2. 기능직

직급별	자 격 기 준
1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2.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8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 3.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 4.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2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.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9급 상당 직급으로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 3.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 4.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3급	<p>자격제한 없음 (단, 채용직무 특성에 따라 자격증 및 기능직 2급 자격기준 미만의 직무경력 제시 가능)</p>

※ 지역제한: 경기도로 제한(단, 필요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지자체장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)

※ 법령에 의한 선임 등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다.